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1992. 11. 11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1월 3일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2년 11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과장 성종무)

가. 제안이유

이 조례는 공업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공업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종전의 중과세하던 것을 일반과세하여 줌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조례로서 제정코자 하는 전문 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음

나. 주요골자

-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에 대한 중과세 세율인 15/1000를 일반 과세인 3/1000으로 적용 (지방세법 제188조 및 동조례 2조)
- 적용세목 : 재산세
- 적용시한 : 1994. 12. 31까지
-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립공업지구내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본 조례는 공업 지역안에서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촉진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인 바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으로 지방 세수에는 일부 감소가 예상되나 '94년까지의 한시적 조례로서 제정시행시 관내공장의 관외 이전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위원	답변자	질의내용	답변내용
이현택위원	성종무 세무과장	○본조례가 제정될 경우 세제 혜택업체는 몇개소이며, 감면되는 금액의 세수 충당 방안은?	○신평·장림공단을 포함하여 납세인원은 256개 업체이며, 개정전 부과금액은 3억3,306만원, 개정 세율을 적용하면 1억2,710만원이며 세수는 다소 감소되나 관내공장의 관외이전이 둔화되므로 문제되지 않음.
류대형위원 한정동위원		○적용시한이 '94년까지로 한시조례인데 '9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며 타 구에서도 '94년까지로 적용하고 있는지?	○적용시한은 부산시 전체 동일하며 '94년말에 상황에 따라 개정여부를 결정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2명, 전원찬성)